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444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9. 2. 1.
4. 회부일자 : 2019. 2. 7.

II . 제안이유

-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III . 주요내용

- 통합운영학교의 학부모회 통합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3조제2항 신설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
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건 [별첨2] 참고)

3. 기 타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안건 [별첨1] 참고

나. 입법예고(2018.11.21.~12.11.) 결과: 안건 [별첨3] 참고

다.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(안건 [별첨4] 참고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(안건 [별첨 5] 참고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443호로 제출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¹⁾ 따라 통합·운영되는 학교의 학부모회를 통합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학부모회는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학부모의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학교교육 참여를 보장하여 학부모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협력함으로써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·운영되는 단체입니다.²⁾

일반적으로 학부모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³⁾ 따라 1학교 1학부모회로 구성·운영됩니다.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합·운영하는 학교의 시설·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 ①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,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·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, 교육과정의 운영, 예산 편성·운영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다만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통합·운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인적·물적 자원(시설·설비 및 교원 등)이 통합·운영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도 학교급 단위로 이원화하기 보다는 ‘통합운영학교’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이며 학부모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4)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이 ‘통합운영학교’에 구성·운영되는 학부모회의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애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제4조(학부모회의 명칭)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"학부모회"를 붙여 표시한다.

4) 「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」 7p.

내용	관련부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통합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시 조례* 제11조(학부모회의 조직) 및 제16조(학년·학급·기능별 학부모회)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*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. 단,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법인의 정관 및 해당 학교 규칙에 따르며, 조례 준용할 수 있음 ○ (예외)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리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견수렴 대상, 방법 및 절차는 학교장이 정함 	참여협력담당관

관계 법령

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17. 6. 22.] [법률 제14603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- 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**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통합·운영하는 학교의 시설·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9421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- 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** ①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,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·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, 교육과정의 운영, 예산 편성·운영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.